##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24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박대출·김형동·송언석

박충권 • 박정훈 • 신성범

김장겸 • 이상휘 • 최수진

이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 전부지급금추계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정부 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	
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
	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
	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
	<u>서</u>